



#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June 15, 2022

정부,『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논의 및 관련 세법 개정안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경제전망」발표

관세청, 일자리 유지 · 창출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정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신 세무예규판례

## 정부,『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논의 및 관련 세법 개정안 추진

정부는 「제 1 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먹거리 · 생계비 · 주거 3 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 대 프로젝트』를 마련하였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6 월 7 일 각각 입법예고함

구체적으로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내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한도를 10%p 상향 조정했고, 부가 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내년 말까지 공급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데친 채 소류 · 김치 · 단무지 · 장아찌 · 젓갈류 · 개장 · 두부 · 매주 · 간장 · 된장 · 고추장은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음. 또 내년 말까지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 · 코코아 원두 등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함. 그 밖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30%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올해 6 월 30 일까지에서 올해 12 월 31 일까지로 6 개월 연장함. 이러한 개별소비세율 인하는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여 교통비를 인하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OECD는 6.8 일(수)에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한 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中 봉쇄 영향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OECD는 우리나라의 '22년, '23년 성장률은 각각 2.7%, 2.5%로, 물가상승률은 '22년 4.8%, '23년 3.8%로 전망하였고, 민간소비가 거리두기 해제, 추경효과 등으로 회복하고 기업투자는 핵심산업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견조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OECD는 러-우 사태 악영향 심화, 물가상승 압력 확대·장기화, 통화긴축 과정에서의 금융 시장·신흥국 부실 촉발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한국의 향후 정책방향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적 관리, 취약계층에 타개팅한 재정지원, 구조개혁, 공급망 복원력·에너지안보 제고 등을 권고함

## 관세청, 일자리 유지 · 창출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은 2021년 1억불 이하 수입업체 중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및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해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힘. 일자리 창출비율이 일정 기준(1천만불 미만 1%, 1천만~5천만불은 2%, 5천만~1억불은 3%)이상 계획인 기업 및 일자리 유지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음.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이외에도 ①일자리 으뜸기업, ②장애인 표준사업장, ③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④관세청 모범납세자, ⑤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 ⑥뿌리기술 전문기업, ⑦혁신형 중소기업, ⑧'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⑨ 2021년 신설 중소기업, ⑩개성공단 입주기업, ⑪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소재기업 및 ⑫특별재난지역 소재기업은 기업의 별도 신청없이 관세청 확인 후 유예적용됨

## 정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22.5.20.부터 2022.6.3)함. 이번 개정은 최근 신규 체결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하였음. 또한 기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인 한-중 FT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원산지증명서 서식,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변경사항 등 3개 협정의 변경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하였음. 그밖에도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보완함

## 최신 세무예규판례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로 환급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불성 실가산세 부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 불성실가산세(현행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되, 납세의무자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구 국기법 §47의 4 ① 및 §48 ①, 2017. 12. 19. 개정 전)

한편,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경정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음(법법 §58의 3 ①, 이하 "쟁점 규정")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청구법인은 공사수익의 귀속시기 오류로 2016 사업연도에 수익을 과다 계상하였으나 이후 감리 결과 감사보고서를 정정공시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사업연도에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함. 이에 처분청은 해당 법인세액(이하 "쟁점 환급세액")을 환급하였다가, 감사원의 처분지시에 따라, 즉 쟁점 환급세액은 상기 쟁점 규정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쟁점 환급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환급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음

이번 심판례의 쟁점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시 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았다가 추징당한 경우 납세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 제 58 조의 3 제 1 항에서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경정청구 취지대로 경정하면서 이와 별개로 쟁점 규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한 잘못이 있음이 명확하여,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함 (조심 2022 서 1579, 2022. 4. 20.)

이번 심판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기재하여 실제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로 판단되며,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세금을 환급하였다가 추징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과거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납부불성

실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유사 사안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1 중 2919, 2021. 9. 14., 조심 2020 부 2016, 2020. 10. 13. 등)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장차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 규정에서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 같음)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증세법 §41 의 3)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함 (서면-2019-법규재산-4667, 2022. 1. 24.)

이번 유권해석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상증세법 §39)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과 함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 검토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 텁-55, 2008. 1. 9.)

Korean Tax Update에 소개된 주제 중 주요 주제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가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을 [삼일 공식 YouTube 채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로 환급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 Contacts

## 국제조세

이종현 709-0598 alex.lee@pwc.com	오연관 709-0342 yeon-gwan.oh@pwc.com	박태진 709-8833 taejin.park@pwc.com	헨리 안 3781-2594 henry.an@pwc.com
이상도 709-0288 sang-do.lee@pwc.com	이영신 709-4756 young-sin.lee@pwc.com	정훈 709-3383 hoon.gp6.jung@pwc.com	전원엽 3781-2599 won-yeob.chon@pwc.com
김상운 709-0789 sang-woon.kim@pwc.com	김진호 709-0661 jin-ho.kim@pwc.com	박수연 709-4088 soo-yun.park@pwc.com	조정환 709-8895 junghwan.cho@pwc.com
이동복 709-4768 dongbok.lee@pwc.com	정복석 709-0914 boksuk.jung@pwc.com	<b>M&amp;A 세무</b>	김영주 709-4098 young-joo.kim@pwc.com
정종만 709-4767 chong-man.chung@pwc.com	나승도 709-4068 seungdo.na@pwc.com	정민수 709-0638 minsoo.jung@pwc.com	김찬규 709-6415 chan-kyu.kim@pwc.com
차일규 3781-3173 il-gyu.cha@pwc.com	남형석 709-0382 hyungsuk.nam@pwc.com	박기윤 3781-9187 ki-un.park@pwc.com	<b>해외투자 세무자문</b>
신현창 709-7904 hyun-chang.shin@pwc.com	조성욱 709-8184 sung-wook.fs1.cho@pwc.com	<b>사모펀드에 대한 M&amp;A 세무자문</b>	김주덕 709-0707 michael.kim@pwc.com
노영석 709-0877 yongsuk.noh@pwc.com	정선흥 709-0937 sun-heung.jung@pwc.com	탁정수 3781-1481 Jeongsoo.tak@pwc.com	김홍현 709-3320 Hong-hyeon.kim@pwc.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pwc.com	남동진 709-0656 dong-jin.nam@pwc.com	김경호 709-7975 gyungho1.kim@pwc.com	이동열 3781-9812 dong-youl.lee@pwc.com
오남교 709-4754 nam-gyo.oh@pwc.com	김광수 709-4055 Kwang.soo.kim@pwc.com	이종형 709-8185 Jonghyung.lee@pwc.com	<b>세무진단 및 세무조사지원</b>
서백영 709-0905 baek-young.seo@pwc.com	신윤섭 709-0906 yoon-sup.shin@pwc.com	<b>상속증여 &amp; 주식변동</b>	김성영 709-4752 sung-young.kim@pwc.com
류성무 709-4761 seongmoo.ryu@pwc.com	선병오 3781-9002 byung-oh.sun@pwc.com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pwc.com	<b>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센터</b>
김영옥 709-7902 young-ok.kim@pwc.com	장현준 709-4004 hyeonjun.jang@pwc.com	이용 3781-9025 yong.lee@pwc.com	김봉균 3781-9975 bong-kyoon.kim@pwc.com
이응전 3781-2309 eung-jeon.lee@pwc.com	최유철 3781-9202 yu-chul.choi@pwc.com	김운규 3781-9304 woon-kyu.kim@pwc.com	<b>Knowledge &amp; Innovation</b>
박종우 3781-0181 jongwoo.tice.park@pwc.com	허윤제 709-0686 yun-je.heo@pwc.com	<b>지방세</b>	조한철 3781-2577 han-chul.cho@pwc.com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owell@pwc.com	성창석 3781-9011 chang-seok.sung@pwc.com	조영재 709-0932 young-jae.cho@pwc.com	정재훈 709-0296 jae-hoon_3.jung@pwc.com
<b>Tax Managed Services</b>	서연정 3781-9957 youn-jung.seo@pwc.com	양인병 3781-3265 in-byoung.yang@pwc.com	<b>삼일인포마인</b>
심수아 3781-3113 sooa.shim@pwc.com	오혜정 3781-9347 haejung.oh@pwc.com	<b>비영리법인 지원센터</b>	이희태 3489-3001 heui-tae.lee@pwc.com
<b>글로벌 인력관리 및 세무자문</b> (People and Organisation)	진병국 709-4077 byungkuk.jin@pwc.com	변영선 3781-9684 youngsun.pyun@pwc.com	
박주희 3781-2387 Ju-hee_1.park@pwc.com	홍창기 3781-9489 chang-ki.hong@pwc.com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